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적과제

김 명 용*

차 례

- I. 문제제기
- II. 환경감사제도의 장·단점과 국제적 동향
- III. 현행 환경경영감사의 현황과 관련법제의 문제점
- IV. 실효성 있는 환경감사제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방안
- V.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기업은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을 상호 연계시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는 기업 환경성과의 평가, 환경관련법규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 회계감사와는 다른 것으로서 기업의 활동이 환경방침 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많은 국가가 환경감사제도가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토대로 하여 법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확립과 환경경영감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와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법상 환경감사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감사법의 도입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 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우리나라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I. 문제제기

환경문제가 기업의 커다란 관심사가 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앞으로의 대응방안으로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생산하여야 하는 것”과 “생산하지 말아야 하는 것” 및 “노력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명백한 태도로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반 아래 구체적인 환경대응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기업은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을 상호 연계시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미국의 연방환경청(EPA)은 1986년 7월 「환경감사지침(Guide to Environmental Auditing)」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환경감사란 “환경법상의 요건의 충족문제와 관련한 시설운영 및 법집행에 관한 피규제 당사자에 의한 체계적·실증적·정기적·객관적인 심사”라고 한다.¹⁾ 그리고 효과적인 환경감사의 요소로는 객관적인 숙련된 감사요원, 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검사시스템, 문서화된 객체 및 사후검토계획, 관련법의 준수 및 비준수와 관련한 판단, 경영진에게 제공된 감사결과의 문서화,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사항의 판단 및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영진으로부터의 위임 등을 들고 있다.²⁾

이와 같이 환경감사는 기업 환경성과의 평가, 환경관련법규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 회계감사와는 다른 것으로서 기업의 활동이 환경방침 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와 환경

1)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6 (1986); Lynn Holdsworth, Florida's Environmental Self-Audit Legislation: An Incentive for Environmentally-Conscientious Business or An Opportunity for the Corporate Polluter to Suppress the Truth?, 27 *Stetson L. Rev.* 210, 214 (Summer 1997).

2)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9 (1986)

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³⁾

환경감사제도는 1970년대 초, 즉 1971년부터 미국의 증권감독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기업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주식회사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⁴⁾ 이 제도는 미국의 환경법에 도입되었고, 이 법률의 기업 내부적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경감사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⁵⁾

환경감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에 근거하여 1989년 세계상공회의소(ICC)는⁶⁾ 그의 “환경감사”라는 취지서에 기업 내에서 환경감사의 실시를 위한 범세계적, 단일적인 형성지침을 공식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경감사의 개념이 최초로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되었다. 그에 의하면 환경감사는 환경보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적, 정기적, 객관적 그리고 문서화된 평가에 기여하는 경영수단이다.⁷⁾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영국은 “환경경영 표준규격에 관한 정책위원회”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환경경영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1992년 3월 16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영국 표준규격 7750”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자체적인 환경정책을 규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환경보호의 목적을 준수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었다.⁹⁾

이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환경감사제도가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토대로 하여 법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확립과 환경경영감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와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법상 환경감사 관련법령을 분석하

3)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126면.

4) Vgl. T. Bartsch, Erfahrungen mit Umwelt-Öko-Audits in den USA, ZUR 1995, S. 14.

5) Vgl. J. Scherer, Umwelt-Audits : Instrument zur Durchsetzung des Umweltrechts im europäischen Binnenmarkt?, NVwZ 1993, S. 11 und 12.

6)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Environmental Auditing – ICC Position paper on Environmental Audits, Publication Nr. 468, Paris 1989.

7) Vgl. W. Schulz, Aktuelles zum Umweltrecht, UBA 1994, S. 4.

8) 영문상의 명칭은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Policy Committee이다.

9) Vgl. Marten/Schmid, Die EU-Öko-Audit-Verordnung und der British Standard (BS 7750) – Eine vergleichende Analyse, RIW 1995, S. 755.

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감사법의 도입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환경감사제도의 장·단점과 국제적 동향

1.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1) 비용절감에 의한 기업경쟁상의 이익

환경감사제도는 일정한 조직과 경영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단기적으로 많은 추가비용을 가져오게 한다. 환경감사제도에의 성공적인 참가를 위해 기업은 그에 필요한 기업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기업은 기존의 기기 직원을 그에 배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생산제한과 환경감정사, 직원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운영 가능한 최적기술의 투입도 기업에 비용상 큰 부담이 된다.

이와는 달리 환경감사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경영과정의 합리화와 자원소비의 절약을 꾀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기업은 환경감사제도를 통하여 경영과정을 시스템적으로 효율화시킴과 동시에 비용의 절감¹⁰⁾을 꾀할 수 있는 경영수단과 정보수단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2) 이미지획득과 위험사전배려를 통한 기업경쟁상의 이익

기업들은 자기들의 납품업체에게 품질보증에 대한 증명을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10) Paula C. Murray, *The Environmental Self-Audit Privilege: Growing Movement in the States Nixed by EPA*, 24 Real Est. L. J. 169(1995), p. 169; 정영태, 환경경영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자, KSA한국표준협회, 2000, 76면 이하.

이와 유사한 발전은 환경감사제도에서도 기대되어질 수 있다. 즉 장래에 공적인 위탁사업의 실시 때 환경감사 인증서를 제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탁해야 할 것이다.¹¹⁾

책임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과실과 위법에 무관한 위험책임을 포함하는 환경법적인 특별규정들이 많다.¹²⁾ 이는 시설가동자가 환경영향의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다시 말하면 시설운영자는 환경영향이 자기의 시설가동을 통하여 유발되지 않았음을 진술할 의무를 지닌다.¹³⁾

이러한 책임법적 배경에 앞서서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사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어느 범위까지 법 규정이 준수되었고 어떤 지침과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업은 손해배상요구와 형법상의 결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시설운영자는 조직상의 의무와 경영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고 시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감사제도는 포괄적인 조직상의 의무로서 문서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책임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증명서를 지닌 기업은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¹⁴⁾ 환경인증서를 지닌 기업은 비교적 적은 보험납입금을 지불하게 된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험정황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¹⁵⁾ 책임에 대한 위험의 감소는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을 높인다.

11) G. Lübke-Wolff, Die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1994, S. 373. 이에 대한 회의적 견해로는 Sellner/Schnutenhaus, Umweltmanagement und Umwelt-betriebsprüfung ("Umwelt-Audit") - ein wirksames, nicht ordnungstechtliches System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NVwZ 1993, S. 932.

12) 예를 들면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 UmweltHG), 독일 수자원관리법 제 22조(Wasserhaushaltsgesetz - WHG), 독일 원자력법(Atomgesetz - AtG) 제25조, 독일 유전공학법(Gentechniksgesetz - GenTG) 제32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3) Balzereit/Kassebohm/Kettler, Umwelthaftung und Versicherungsschutz, BB 1996, S. 212.

14) 정영태, 환경경영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자, KSA한국표준협회, 2000, 37면; Vgl. Lauff, *Das Umwelt-Audit in der betrieblichen Praxis*, Köln 1993, S. 14.

15) Lauff, a. a. O., S. 14.

2. 환경감사제도의 환경 정책적 장점

(1) 환경법의 유연성증가

환경감사제도는 전통적인 환경보호수단에 비하여 상당히 유연성을 지닌다. 환경감사법의 의미에 있어서 환경조직시스템과 경영시스템의 설치를 통하여 기업은 자기 소재지의 내부적 특성을 더 쉽게 파악하고 또 그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여러 측면들은 외부로부터 강제되기보다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참가 하에 기업관리의 과정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감사법은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용 가능한 최적기술”의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동적인 요소를 통하여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2) 집행결여의 개선

종래의 질서행정법상의 수단에 의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되어왔다. 따라서 환경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집행결여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감사제도는 환경법상의 집행결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¹⁶⁾ 즉 자발적으로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를 결정한 기업은 한편으로는 상승된 동기를 가지고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건들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법규의 준수에 대한 감독이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적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독립된 환경감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절감을 위하여 환경행정관청의 조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집행결여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감사제도는 국가의 감독사무를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장래의 환경행정상의 집행결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¹⁷⁾

16) Vgl. D. Sellner/J. Schnutenhaus, NVwZ 1993, S. 929.

(3) 일반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

최근에 국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제고됨으로써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은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기 기업의 환경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환경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대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일반 공공, 즉 대중매체와의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감사법은 일반 공공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는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소재지의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감사제도가 환경정보법을 측면에서 보조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4) 환경감사제도에 의한 규제완화

비질서법적 수단으로서의 환경감사수단은 질서법의 영역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관계된다.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에 의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자체책임을 떠맡은 기업은 그 대가로 질서법적인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¹⁸⁾ 기업들은 질서법의 영역에 있어서 규제완화조치를 통한 비질서법적인 환경감사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3.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적 동향

(1) 의 의

OECD는 경제성장(경제목표), 사회적 평등(사회목표) 및 건전한 통치(환경목표)의

17) Vgl. G. Lübke-Wolff,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1994, S. 363.

18) G. Lübke-Wolff, Das Umweltauditgesetz, NuR 1996, S. 225; dies, Öko-Audit und Deregulierung –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R 1996, S. 174 mit Fn. 15.

통합을 이념으로 하며, 모든 시민이 적합한 생활수준, 개인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면서 OECD국가와 그 밖의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팽창하는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한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정책과 현재의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계속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호정책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무효화되지 않을까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¹⁹⁾

(2) 경제와 환경의 통합

(가) 국제협력에 의한 글로벌한 통합과 개발협력전략

국제협력에 의한 글로벌한 통합에 관하여 1990년대의 테마는 개발협력이었다. 즉 개발은 개발도상국내의 정치적 의사·능력 및 대중의 지지에 근거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정한 국제적인 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협력과 개발도상국은 인간중심의 발전(생명·생활질의 개선)과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참가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²⁰⁾

개발협력전략의 목표는 빈곤과 투쟁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진정한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적 복지는 인류의 윤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청으로서 빈곤의 추방이며, 사회개발은 초등교육·성적 평등·기본적 보건위생·가족계획의 추진이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복원의 국가전략의 책정과 운영이다.²¹⁾

(나) 경제와 환경의 통합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수단

환경세로서는 CO_x세, NO_x세 및 SO_x세가 있으며, 환경과징금으로서는 폐기물처리과징금, 제품과징금이 있다. 이론상 적절한 과징금 및 조세는 배출의 한계비용이

19) OECD, *Sustainable Development : OECD Policy Approaches for the 21st Century*, Paris, 1997, p. 9.

20) OECD, op. cit., at. 17.

21) OECD, op. cit., at 22~23.

한계피해비용과 같은 점에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및 조세는 경영자에 대하여 그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려는 암시를 주며,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²²⁾

(다) 환경보호성과의 평가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를 전체적으로 경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천연자원의 이용을 보증하는 각국의 환경정책에 관하여 그의 「비용 대 효과」를 각 국가의 대기, 물, 폐기물관리, 자연보호, 천연자원관리에 걸친 목표에 따라 측정하여 그 국가의 환경보전능력과 국제적 공헌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성과의 평가가 각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졌다.²³⁾

(3) 무역 · 환경전략

OECD는 환경목표의 달성과 개방적 다각무역의 유지와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불가결함으로 1991년 무역 · 환경공동전문기회의를 발족하여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국가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별 환경관련규격의 조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는 1993년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담당할 전계위원회(TC 207)²⁴⁾를 발족시켰다. TC 207의 표준화작업은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그 주제로는 환경경영체제(EMS), 환경감사, 환경마크, 환경성과평가, 전 과정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SO가 추진하는 환경경영분야의 국제표준규격은 각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권고사항으로 국가차원에서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 환경방침, 환경정책, 환경관리조직을 갖추고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22) OECD, op. cit., at 41.

23) OECD, op. cit., at 66.

24) Technical Committee 207로서, ISO 14000 시리즈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4) ISO 14000시리즈

ISO 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자율규제이다. 그의 제정과정은 미국의 민간환경규제인 「CERES원칙」이 국제사회의 장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과정과 같았다.²⁵⁾

ISO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인회의(BCSD)²⁶⁾의 요청을 받아 1993년 TC207(환경관리전문위원회)을 설치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 ISO 14000시리즈의 책정에 향한 검토를 되풀이하여 다음 같은 것이 발효되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방법 및 이용안내(1996년 9월)

ISO 14004: 환경경영시스템 - 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술의 일반지침

ISO 14010: 환경감사의 지침 - 일반원칙

ISO 14011: 환경감사의 지침 - 감사절차-환경경영감사

ISO 14012: 환경감사의 지침 - 환경감사자의 자격기준

ISO 14020: 환경마크 - 일반원칙

ISO 14021: 환경마크: 자기선언에 의한 환경주장

ISO 14040: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원칙과 구조

ISO 14041: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분석 등

ISO 14050: 환경용어

ISO 14000시리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한 산업계헌장」, EU계획: 환경경영 감사계획(EMAS), 영국규격협회(BSI)의 규격: BS 7750의 영향을 받아 발행되고 있다.

ISO 14000시리즈는 국제적 환경자율규제이며,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채용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리스크의 회피, 환경비용의 절감, 환경효율성의 향상, 환경이미지의 제고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환경책임을

25) 「CERES원칙」은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사회적 투자기관(프렌크린사 등)과 환경보호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합조직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협의회(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가 1989년 9월 7일 작성하여 발표하였던 「환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 및 기업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행할 때의 판단기준」이다.

26) 원문은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완수하는 데에 유효할 것이므로 ISO 14001의 인증취득은 진척될 것으로 생각된다.

ISO 14000시리즈는 ISO 9000시리즈의 품질규격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체제 규격의 문화가 이미 수립되었으며, 조직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규격은 국제규격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며, 세계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O 규격제정에 따른 각 국가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사전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Ⅲ. 현행 환경경영감사의 현황과 관련법제의 문제점

1. 의 의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공업진흥청주관 아래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대책반”을 설치하고 산하에 5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국제표준화에 대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실무작업반은 ISO환경표준규격의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며, 국내 환경규격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즉 1998년까지 완료될 ISO 환경경영 규격을 감안하여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환경경영규격을 채택하여야 하며, 인증심사 및 심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국내환경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마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로서 1991년 3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자문회의, 공청회, 외국 현지 출장 등을 거쳐 1992년 4월 환경부(당시 환경처)의 고시로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마크 대상상품 및 부여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995년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환경경영체제를 도입·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면허면제,

일정기간 지도단속의 면제, 자가측정의무의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우선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1995년 12월 29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을 포함한 전과정(life cycle)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정량화 한 환경성적표지를 제3자인 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녹색구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제품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1조).

이 두 법률은 기업을 환경경영시스템으로 유도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결국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파악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감사에 의한 인증제도와 유사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현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아울러 이 두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감사 관련법제의 분석

(1) 국가표준기본법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술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는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국제규격을 정하고 있는 ISO 14000시리즈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즉 기업이 ISO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규격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IS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규격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에는 환경경영관리시스템도 포함된다(제21조 제2항 제5호).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환경경영촉진을 위하여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도입할 수 있으며(제24조 제1항),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 기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4조 제3항).

이와 같이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관리·운영 및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시리즈)의 도입과 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민간기구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환경법규의 준수 및 친환경적 기업 활동을 통한 환경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한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인증해 줄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가) 연혁과 구성

이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2년 1월 14일의 개정은 이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경영체제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 온 것이었다. 즉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그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첫째, 정부는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여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가 촉진되도록 하였다(제15조). 둘째,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사업을 종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민간법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의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였다(제16조). 셋째, 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및 산업부산물물의 교환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기업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제17조).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원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원자격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경영체제가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다(제22조의 삭제).

(나) 주요내용

1) 종합시책의 수립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종합시책은 ①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②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

표의 설정, ③생산공정개선·청정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방법, ④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방안, ⑤환경경영의 촉진방안, ⑥그 밖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수준·자원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제3조 제3항).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이러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는 ①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②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유통단계에서의 환경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④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⑤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제4조 제2항).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2)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또한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청정생산기술, ②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지원 요청한 기술, ③환경설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3) 환경설비품질인증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환경설비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환경설비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4) 환경경영의 촉진

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사업자단체는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①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②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③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수행한다(제16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제16조 제2항), 인정기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및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①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②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④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⑤국내의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이를 기업들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그리고 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다) 결 어

이상과 같이 이 법은 환경친화적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그에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 전담부처는 환경부이므로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인증심사원의 양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는 연방환경부, 미국의 경우는 연방환경청이 환경경영체제에 대하여 관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법의 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나)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제16조의2 제1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제16조의2 제2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6조의2 제3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6조의2 제4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의2 제5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다)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16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6조의3).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환경법규에 위반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기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④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7).

(라)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마)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로서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식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0조 제2항),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1조 제1항).

(바) 환경표시 등의 사용

환경표시 또는 환경성적표시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같은 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에 따라 환경표시 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시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그러나 환경표시 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시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시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2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시의 인증받은 자가 ①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7조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시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③환경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④그 밖에 환경표시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제23조).

(사) 결 어

이 법은 친환경적으로 기업경영을 한 기업에 대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취소 및 우대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환경경영감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제도를 통하여 환경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환경경영에 적합한 기업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간접적으로 환경경영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관이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시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성적표시의 인증을 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에 따라 환경표시 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시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기 기업이 환경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의식이 깨어있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성적표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

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표식을 표시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가) 목 적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95년 4월 14일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이 환경부의 예규로 제정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월 31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2007년 6월 25일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²⁷⁾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나) 환경친화기업의 개념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은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 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제2조).

(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 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한다)은 환기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이하 “환경개선계획서”라 한다) 10부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사업장내에 다른 법인이

27) 환경부 고시 제1998-70호.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단위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제3조 제3항).

(라)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

환경개선 계획서에는 ①사업활동의 개요, ②환경관리 일반현황, ③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④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 ⑤환경개선계획, ⑥기타(신청기업에서 환경개선계획 이행시 심사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가 포함된다(제4조 제1항 별표1).

환경관리 일반현황에는 ①경영층의 환경경영 의지, ②환경관리체계 구축현황, ③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현황, ④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현황, ⑤환경보전 관련활동 및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현황, ⑥환경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민원 발생현황이 속한다.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①공정흐름도 및 원·부재료 사용 원단위 분석(제조업에 한함), ②투입·배출물질(원료, 용수, 연료사용량 등)에 의한 물질수지표(제조업에 한하며,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물질수지표와 주요공정별 물질수지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분석(배출 시설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분석), ④주변 환경질과 사업장 배출오염도 비교 및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환경성 비교분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현황 및 성과,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현황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관리 및 개선현황,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 ④기타분야 환경관리 및 개선현황(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환경개선계획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

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개선계획,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④기타분야 환경개선계획(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 중 제1항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경경영체제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제4조 제2항).

(마) 환경친화기업의 심사 및 지정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첫째, 환경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친화기업신청 서류가 적합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제2호 가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이상이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2 제1호·제2호 나목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환경개선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환경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환경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

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심사단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평가지정항목은 “우수” 이상 [별표 2 제1호·제2호 나목 중 (2)의 (나) 및 (다)항목 산술 평균과 (3)의 (나) 및 (다)항목 산술 평균이 각각 우수 이상] 의 평가를 받아야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실·국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신청기업에 한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법인의 최고 경영자(CEO)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환경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5조 제7항).

환경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환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 5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 6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 현판을 환경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제5조 제8항).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제5조 제9항).

(바) 환경친화기업 심사단의 구성 및 심사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장 소속 하에 심사단이 설치되는데(제7조 제1항), 심사단은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관리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

자치단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친환경상품진흥원 및 현장실무에 능통한 환경친화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제7조 제2항).

환경관리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심사위원 5인 내지 10인을 선정하되,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환경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과 환경친화기업 재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호·제2호 가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다(제8조 제1항).

②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와 별도로 각 호별로 5점(제1호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 시는 각 호별로 1점(제1호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가산점의 합계는 20점(이행상황평가 시는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는 기업(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법인이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경우, 동 보고서에 해당사업장의 환경정보를 포함하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경우 가산점 인정, 그 외에는 가산점의 50%를 부여)
2. 환경경영기법 등(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에코디자인, 환경성적표지, 환경친화적물품공급망,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친환경상품의 제조, 그린마케팅, 녹색구매 등 8개 중 3개 이상)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환경경영기법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3.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 자발적협약 또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4. 폐기물감량화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천연가스차량 도입기업
5. 환경기술개발, 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또는 환경보전행사를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업
6. 기타 획기적인 청정기술개발·적용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서 제7조의 심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제8조 제2항).

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단의 현지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환경청장이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신청기업에 대하여 자료 등의 보안을 요구한 경우와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3항).

(사) 환경친화기업의 준수사항

환경친화기업은 신청당시 제출한 환경개선계획서상의 환경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환경친화기업은 환경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환경친화기업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환경친화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4항).

(아) 환경개선계획 이행여부의 확인 등

환경친화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의 전년도 이행실적과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하반기 이후에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와 금년도 상반기에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의 전년도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제5조 제1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환경친화기업이 제출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별표 3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수질원격감시체계(이하 “TMS” 라 한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별표 3 제1호·제2호의 (1)중 (라) 및 (마)항목(이하 “필수평가이행항목”이라 한다)의 평가결과는 우수 이상(필수평가이행항목 산술평균이 우수 이상)이어야 한다(제13조 제2항). 환경청장은 제조업종에 대한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 시 필수평가이행항목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등을 평가한 후에는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친화기업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4항).

(자)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이 환기법 제19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7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3조의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환경친화기업의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필수평가이행항목의 점수가 우수 미만인 경우에는 환기법 시행규칙 제33조의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환경청장은 환경친화기업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항). 환경부장관은 환기법시행령 제22조의7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환경친화기업이 행정처분(환기법 시행령 제22조의7 제1호 각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에 한함)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제14조 제5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 제6항). 환경친화기업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기업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14조 제7항).

(카) 그 밖의 사항

환경친화기업은 환경친화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제17조 제2항).

환경지정심사와 관련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또한 환경관리청장은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개선계획서 중 관할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3. 결 어

국가표준기본법은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술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 및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규격과 일치에 대하여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에는 환경경영관리시스템도 포함된다.

그래서 국가표준기본법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경영촉진을 위하여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도입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민간인증체제의 인정,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자로서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경영감사와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보고·검사의 면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신청, 환경친화기업 심사 및 지정, 환경친화기업 심사단의 구성 및 심사,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제16조 제2항), 인정기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및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경영의 촉진과 환경경제체의 인증의 운영 및 관리는 그의 특성상 환경부장관의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의 고시로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환경경영체제의 구축과 환경경영감사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양 부처 사이에 사전협의를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를 통하여 관할을 일원화시키고 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IV. 실효성 있는 환경감사제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방안

1. 입법방식 및 제정목적

(1) 입법방식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 기본법에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과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 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설비자금 등의 지원, 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기준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 전담부처는 환경부이므로 환경경영체제 인증 및 인증심사원의 양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선진 국가, 즉 독일, 미국의 입법례²⁸⁾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는 연방환경부, 미국의 경우는 연방환경청이 환경경영체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관할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8) 출처,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2002-02), 한국법제연구원, 2002, 47면 이하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중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에 필요한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환경감사법의 일부내용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환경기술의 개발과 설비 등에 대한 인 증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켜 법체계의 일관성 및 주무부처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그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방식에 있어서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별환경법의 일부내용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이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을 그 전제로 한다.

(2) 입법목적

이 법률은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환경경영의 확립과 전환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기업경영상 적절하고 지속적인 환경보호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자기의무에 근거하여 경영상 성장은 가능한 한 환경을 보호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다. 또한 기업은 자기들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자체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은 자기의 활동상 환경에 중요한 측면에 대한 일반 공공의 관심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²⁹⁾

기업은 그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 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³⁰⁾

참고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환경친화기업은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29) 유럽환경감사법 전문 참조(Präambel der EG-Öko-Audit-Verordnung).

3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참조.

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은 적어도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환경경영의 확립과 진화에 그 목표를 두고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과 환경경영감사에 관련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경영촉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환경경영의 촉진과 환경경영감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실시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경영촉진과 환경경영감사는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 사이에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환경경영체제와 그의 인증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표준기본법과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통합되어 운영·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환경법의 영역에 있어서 ISO 규격에 따라 환경친화적 각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개별법령들도 원칙적으로 이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법은 환경경

영의 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적용범위

환경경영체제의 확립과 환경감사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가? 이는 그동안 환경경영체제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기업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개념은 중소기업, 대기업,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산, 판매, 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행하는 조직체³¹⁾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업에는 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 제1항).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사업장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그리고 단위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 제3항).

유럽환경감사법은 기업이라는 개념을 일정한 소재지에서 그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영감사를 행하는 모든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³²⁾ 여기에는 모든 생산 공장과 가

3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공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기발전, 가스 생산, 열발생과 재활용, 폐기물관리를 하는 기업이 포함된다.³³⁾

그리고 환경감사절차와 환경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기업이나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기업이 하나 또는 여러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단위, 즉 구체적인 소재지이다. 구체적 소재지는 일정한 소재지에서 기업의 통제 하에 영업활동이 되고 있는 지대이다.³⁴⁾ 이러한 입법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에서 그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기업은 일정한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환경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조직일 것이다.

3. 환경경영체제 및 환경감사를 위한 기업 내부적 수단

(1) 환경정책의 수립과 확립

환경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한 환경감사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정책은 환경경영체제와 환경감사제도의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전체목표와 활동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은 기업경영차원에서 일정한 환경정책을 명문으로 규정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는 또한 기업의 환경관련법의 준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매체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부문, 원료와 폐기물부문, 소음방지, 생산계획, 수송과 공급관계, 사고에 대한 사전배려 등일 것이다.³⁵⁾ 이러한 환경정책의 목표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수인가능하고

32) 제2조 참조.

33) 제2조 및 제3조 참조.

34) 유럽환경감사법 제2k조 참조.

35)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1 C 참조.

운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의 투입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환경침해를 줄이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환경정책은 환경관련법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상 환경보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상의 환경개선 계획서는 기업의 환경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환경개선 계획서는 ①사업 활동의 개요, ②환경관리 일반현황, ③사업 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④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 ⑤환경개선계획, ⑥기타(신청기업에서 환경개선계획 이행시 심사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관리 일반현황에는 ①경영층의 환경경영 의지, ②환경관리체계 구축현황, ③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현황, ④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현황, ⑤환경보전 관련활동 및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현황, ⑥환경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민원 발생현황이 속한다.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①공정흐름도 및 원·부재료 사용 원단위 분석(제조업에 한함), ②투입·배출물질(원료, 용수, 연료사용량 등)에 의한 물질수지표(제조업에 한하며,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물질수지표와 주요공정별 물질수지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분석(배출 시설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분석), ④주변 환경질과 사업장 배출오염도 비교 및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환경성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현황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 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현황 및 성과,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현황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오염물질 배출 관리 및 개선현황,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 ④기타 분야 환경관리 및 개선현황(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환경개선계획은 ①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 개발·적용,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보고서 및 환경회계 도입 등 환경경영 개선계획,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 및 분야별(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③유독물의 제조·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 ④기타분야 환경개선계획(소음·진동, 악취, 토양, 지하

수, 위탁처리 관리, 환경보전활동 및 국제환경협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개선 계획은 기업의 환경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기업의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초의 환경감사의 실시

기업이 소재지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 환경영향과 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하여 제1차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실시되어야 한다.³⁶⁾ 이러한 환경감사의 결과는 기업이 규정하고자 하는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토대가 된다. 환경감사의 기능은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감사와 적응에 대한 기초가 되는 환경경영감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환경감사는 광범위하게 평가된 현안조사로서 종결되는데 현안조사에는 특히 환경상황과 환경법의 상황을 내포하는 경영상의 환경장부의 작성이 속한다. 환경상황은 특히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폐수의 하천유입, 폐기물에 대한 보고, 토양오염, 물-, 에너지-, 원료소비 및 열과 소음의 방출을 의미한다.

(3)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의 설정

기업은 환경감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소재지에 대한 환경목표와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³⁷⁾ 환경목표는 기업이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이며, 기업의 환경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환경목표는 환경영향의 발생방지, 감소, 제거를 위한 기업 내부적 지침이다.

환경프로그램은 일정한 소재지의 환경보호를 보증해야 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및 동목표의 실현에 투입되었고 투입될 수 있는 조치들과 이 조치의 실현에 확정된 기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36) 유럽환경감사법 제2b조 참조.

37) 유럽환경감사법 제3c조 제1항 제1문 참조.

환경보호의 목표는 기업이 자기의 경영상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한 것을 의미한다. 환경프로그램은 또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포함한다. 새로운 또는 변경된 생 산품, 즉 생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환경프로그램들이 설정될 수 있다.³⁸⁾

환경프로그램은 경영상의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의 이 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프로그램도 유동적인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충되어져야 한다.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확립

환경경영시스템은 전체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에 해당되며, 환경정책의 실현과 확립 을 위한 조직구조, 행위방식, 담당부서, 형식적 절차, 수단과 과정을 포함한다. 환경 경영시스템은 한편으로는 환경보호를 보증하는 경영조직의 수단적 전제조건을 설정 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은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 활동의 환경영향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구체적 필요조건을 정한다.

예를 들면 유럽환경감사법 제3c조에 의하면 기업은 환경감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 여 한 소재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조직상 의 전제조건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활동상의 환경영향을 심사, 평가와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5)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환경프로그램이 설정되었고 환경경영시스템이 확립된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에 대 한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³⁹⁾ 환경경영감사는 소재지와 관련 된 기업내부의 경영감사를 의미한다.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는 환경감사제도의 핵심부분에 속한다. 환경경영감사는

38)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A I 참조.

39) 유럽환경감사법 제3d조 참조.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 경영과 과정의 성과에 대한 시스템적, 정규적, 객관적 그리고 문서화된 평가를 포함하며, 둘째, 환경과 관련된 행위방식에 대한 경영감독의 용이화와 환경보호영역에서의 기업정책의 정확한 평가에 기여해야 하는 경영수단이다.⁴⁰⁾ 따라서 환경경영감사는 기업내부의 경영감사자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외부인 및 조직들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감사 관련법제에서는 기업내부의 자체적인 환경경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환경경영감사는 감사범위의 확정으로써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자는 특히 현재 유효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활동은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토론, 소재지의 환경보호의 질의 평가와 관련하여 서류와 서면상의 절차의 감사를 포함한다.

환경경영감사의 목표는 특히 현존하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환경경영시스템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법규범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경영시스템이 소재지의 환경관련 과제의 성취에 유효하고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⁴¹⁾

환경경영감사의 실행절차는 유럽환경감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소재지가 법률상 그리고 기업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이 실현되고, 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국제표준협회 ISO 10011과 기타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감사되고, 시스템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경영감사의 확증과 결과에 대한 명백한 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 후에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⁴²⁾

동 보고서는 현실상황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환경감사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환경경영감사 때에 파악된 감사범위를 문서화하고,

둘째, 기업의 환경정책과 경영상의 현실과의 일치정도와 소재지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발달에 관한 정보를 기업경영층에 제공하고,

40) 유럽환경감사법 제2f조 참조.

41)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II E 참조.

42)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II F 1 제1항 참조.

셋째, 소재지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의 감시를 위한 규정들의 유효성과 신뢰성의 상황에 대하여 기업경영층에 보고하고,
넷째, 요구되는 시정조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데에 있다.⁴³⁾

(6) 감사보고서에 의한 환경공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성과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지표, 환경경영성과 계량화사업이 있는데,⁴⁴⁾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하고 이를 일반국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수요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감사보고서와 다소 유사하다.

최근 선진 외국기업 및 투자기관의 기업환경성과 자료요구의 증가로 환경정보공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수의 대기업만이 자체적으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환경정보공개를 위해서는 환경보고서의 작성·공개 표준화와 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0년도에 마련한 기업 환경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현장 적용하기 위한 “기업환경보고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업환경보고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정보공개의 제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환경보고서 시범사업은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성과 및 환경개선노력 등의 환경정보를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경영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보고서가 단순히 작성되어서는 의미가 없고 환경경영감사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작성되고 그 인증을 받을 때만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 후에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감사

43) 유럽환경감사법 부록 II F 2 참조.

44) 환경부, 2002 환경백서, 2002. 11, 124면.

제도에 참가한 모든 기업 소재지는 최초의 환경감사와 후속되는 모든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후에 환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인에게 경영상의 환경보호 상황을 일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환경보고서는 특히 아래의 5가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 해당 소재지에서의 기업의 활동에 대한 보고,
- (2)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 (3)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물 발생과 원료소비, 에너지소비, 공업용수의 소비 및 소음과 기타 환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수적 통계
- (4) 해당 소재지에 대한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시스템의 표명,
- (5) 차기 환경보고서의 제시에 대한 일자,
- (6) 허가된 환경감정사의 성명.

4. 환경감정사에 의한 기업 외부적 환경감사와 인증절차

(1) 개 설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환경공표는 기업의 환경상황의 주관적 발표이다. 따라서 환경감사절차의 하나로서 환경감정사에 의한 환경공표의 외부적 법적 유효선언이 요구된다. 환경감정사는 해당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경영감사와 환경공표가 유럽환경감사법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심사한다.

이러한 외부의 환경감정사에 의한 환경감사와 환경공표의 외부적 법적 선언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을 가진 전문가를 허가과정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관청을 어디로 하며, 환경감정사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환경감정사의 허가

독일의 경우 환경감정사는 그에 요구되는 교육과 경험을 가져야 하며,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환경감정사 협회로서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등기된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허가될 수 있다.⁴⁵⁾

유럽환경감사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만이 환경감정사로서 허가되어 진다.⁴⁶⁾ 독일 환경감사법도 환경감정사의 임무수행상 요구되는 신뢰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독일환경감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환경감정사는 허가조건인 심사 시에 방법론, 환경경영감사의 실시, 기업경영, 기업경영상의 환경사무,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적 관계와 경영상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자기의 전문지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감정사의 허가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에 대한 증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독일환경감사법 제8조는 전문지식에 대한 자격증 취득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은 우선 특정한 전공부문의 대학졸업과 기능장 자격증과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서도 갖추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경영상의 환경보호에 대한 실무상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적어도 3년간의 그 부문의 직업 활동이 요구된다(독일환경감사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경감정사의 허가신청 때 당사자는 그 업종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제지, 화학, 섬유, 금속세공 등). 왜냐 하면 각 분야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시험은 전문적 지식의 소지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독일환경감사법 제7조 제2항 제2d호).

우리나라의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과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구의 활용이 허용되어 있으며(제24조 제2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 인력

45) 독일환경감사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46) 유럽환경감사법 제6조 제4항 참조.

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6조 제2항). 여기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일반요구사항(ISO 가이드 61)이다.

이에 반하여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은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장 소속 하에 심사단을 두고 있다(제7조 제1항). 이 심사단은 환경경영,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관리청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및 현장실무에 능통한 환경친화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제7조 제2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경영시스템 및 환경감사 관련법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자격요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일반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에 반하여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환경관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경관리청장이 심사단을 위촉하는 것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환경보호에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감사기관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대학에서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환경기사자격을 취득한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환경감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감정사의 임무

기업이 내부적 환경감사를 실시하여 그것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환경감사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환경감정사에 의하여 환경감사를 받고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환경감정사는 당해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시스

템, 환경감사와 환경경영감사절차 및 환경공표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기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가)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환경감정사는 기업의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이 환경감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가 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기업의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이 환경관련법규정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환경정책과의 일치여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밖의 환경관련법과의 조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최초의 환경감사에 대한 심사

환경감사제도의 하나의 요소로서 기업 내부적 환경감사는 환경감사제도에 최초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차후감사 때에는 환경경영감사에 통합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반복된다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만 가중할 뿐 불필요한 일을 중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환경감사는 소재지에서의 생산 활동이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사실상의 영향을 검사하는 데에 기여한다. 환경감정사는 그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환경감사의 기술적 적합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불필요한 일의 중복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감정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적용한 개개 측정의 방법과 절차를 검사하여야 하며, 측정기록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감정사는 스스로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측정기록에 흠이 있거나 또는 공인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측정절차의 정확한 준수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추출시험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상의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문을 간과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감정사는 작업행위와 담당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찰하여야 한다.

(다)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법예의 일치와 기타 목표예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상의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환경법과 기타목표예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식,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감정사는 환경경영시스템의 기능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환경감정사는 소위 환경편람에서 경영시스템의 기록을 통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감정사는 담당직원과의 면담과 임의 추출시험을 통하여 서류상의 기록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적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라)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심사

환경감정사는 기업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환경정책, 환경목표, 프로그램 및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감사시스템, 환경감정사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실시되어졌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마) 환경공표예에 대한 심사

마지막으로 환경감정사는 환경공표예의 정확성 여부와 그 공표가 해당 소재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4)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은 이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심사단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환경감정사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환경감정사의 허가기관은 환경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환경부장관이 허가기관으로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감정사는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독립적·객관적 위치에서 환경감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감정사의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부문은 전문적이고 기술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법규명령으로써 하나 또는 다수의 민법상의 법인에게 환경감정사에 대한 허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탁규정에 근거하여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가 설립되게 되었다. 동 회사가 환경감정사의 허가와 감독업무를 행한다. 공무위탁을 통하여 국가는 공무수탁자인 사인의 전문지식, 동기와 기술적, 경영적 설비를 이용하게 된다. 공무수탁자는 사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능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경제상의 기업으로서의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독자적인 공권력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독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1조 제4항상 관청에 속하며 자기의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공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공권력의 위임은 법에 의해서 또는 법률상의 위임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공무수탁자는 자기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로부터의 통제를 받는다. 위탁자의 통제는 허가행위와 감독활동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허가와 자격증의 철회와 감정행위의 금지에도 미친다. 이와 같이 환경감정사 공증과 허가회사는 연방 환경부장관의 법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문통제는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감정사의 허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으로서는 환경관리공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제1조). 공단은 ①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②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정책의 연구·개발, ③환경시설의 수탁관리, ④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과학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⑥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⑦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⑧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을 위

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설계 및 시공감리, ⑨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⑩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각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감정사를 허가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환경관리공단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이 인력, 조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 환경감정사위원회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이 환경감정사의 허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감독, 자격취득 및 허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정관청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그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법의 도입 자체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와 기존의 규제일변도의 명령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의 환경관리를 지양하여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환경규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산업계, 즉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독일의 환경감정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고려될 수 있다.

독일환경감사법은 제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과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발해진 법규명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과 독일 환경감정 공증과 허가회사를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감독, 환경감정사의 허가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기관으로 환경감정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⁴⁷⁾ 동위원회는 관할연방부처를 위해 자문하거나 지침의 제정을 제안하지 않고 스스로 지침을 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동지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환경감정사위원회는 25명의 위원과 그의 대표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제, 자유업, 노동조합과 환경보호단체의 독일 연방상부연합회들과 관할연방과 주의

47) 독일환경감사법 제21조 제1항 제2문 제1호 참조.

최고기관들로부터 추천되어 연방 환경부장관으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임명된다.

또한 동위원회는 환경감정사 허가기관의 시험위원회의 임명에 관한 시험위원의 목록관리, 배석권을 가지는 이의제기위원회의 임명에 대한 추천, 모든 허가사무와 감독사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과 환경감사법에 의한 자격증명의 인정심사에의 참여의 임무를 지닌다.

독일환경감사법은 환경감사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인 자발성, 객관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원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감정사 위원도 고려할만한 제도이다.

(6) 소재지등록절차

환경감사에의 참가공표와 그로 인한 우대조치는 해당명부예의 소재지의 사전등록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가) 등록기관

환경감사에의 참가기업이 환경감사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는 경우 이를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독일의 경우는 감사를 받은 소재지의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는 문서상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주는 뮌헨 상공회의소를 그 등록기관을 지정하였다. 등록기관을 그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관할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 그 감독관청으로는 대개 주 경제부가 그에 해당된다. 감독조치는 물론 주 환경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이 각 개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우대조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현행 개별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부가 등록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등록절차

환경감사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는 기업은 유효성이 인정된 환경공표를 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할 것이다. 등록기관은 당해 기업의 소재지가 환경감사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를 소재지장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기관은 해당 영업부문에 대해 환경감정사가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록될 소재지와 감사된 소재지가 상호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7) 참가공표

소재지등록은 기업에게 환경감사제도에의 참가를 증명하는 참가공표 소위 환경감사 인증서 및 참가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고려된다.

5.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

(1)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감사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장래에 공적인 위탁사업의 실시 때 환경감사 인증서를 제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책임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과실과 위법에 무관한 위험책임을 포함하는 환경법적인 특별규정들이 많으므로 시설가동자가 환경영향의 입증책임을 저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다시 말하면 시설운영자는 환경영향이 자기의 시설가동을 통하여 유발되지 않았음을 진술할 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사건 전체의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어느 범위만큼 법규정들이 준수되었고 어떤 지침과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업은 손해배상요구와 형법상의 결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셋째, 환경감사제도는 포괄적인 조직상의 의무로서 문서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책임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증명서를 지닌 기업은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경증명서를 지닌 기업은 비교적 적은 보험납입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험정황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책임에 대한 위험의 감소는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을 높인다.

미국의 경우는 환경감사특권법을 통하여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다호주와 콜로라도주는 기업이 자기가 행한 위법행위를 임의적으로 공시하고 신속하게 교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시간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위법행위가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캔자스주, 미시시피주 및 그 밖의 주들은 기업이 임의적 환경감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벌칙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몇 개의 주는 임의적으로 환경법의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시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뉴저지주는 기업이 행정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경미한 환경법의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위법행위가 환경 또는 공중의 보건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밖의 주는 공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민사 또는 행정벌칙으로부터의 포괄적인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감사제도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타당한 것 같다. 왜냐 하면 환경감사의 목적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하도록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환경보호를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대조치는 물론 독일에서 사실상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환경감사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비밀보장

환경감사시스템에 참가하는 기업은 이 시스템에 참가하는 다른 당사자, 특히 환경감정사, 등록기관, 환경기관 및 경쟁자들과 다양한 법적 관계에 있다. 이를 통하여 환경감사에 참가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환경경영감사에 참가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기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종래에는 환경보호가 국가의 임무로 파악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국가는 규제일변도의 명령통제방식에 의한 환경관리를 하여 왔는데, 이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환경규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래의 질서법상의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행정법상의 수단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을 환경보호에로 유도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영의 합리화와 자원소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의 자발적 참여로 인하여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감사제도는 기업경영과 환경보호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감사제도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게 되면 산업과 환경은 장래에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과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이 환경경영관리시스템과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하여 관련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설비자금 등의 지원,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강구,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등 각각 개별적인 차원에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감사제도와 유사한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친화기업의 인증 및 지정에 관하여 개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업 활동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령은 국제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환경경영체제와 환경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미비한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의 내용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촉진 및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법률」에 담아 국제표준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의 구축과 환경경영감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길택·이제빈, 환경경영시스템과 경영자의 역할, 청문각, 2001.
- 구도완,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6.
-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 권희섭, 삶도 살리는 환경경영, 21세기북스, 1998.
- 김명용,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방안, 연구보고(2001-7),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명용,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2002-2), 한국법제연구원, 2002.
- 김은원·강신민, ISO900/14000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추진 실무, 대경, 2000.
- 박수혁, 환경감사에 관한 제도적 고찰, 환경법연구(제16권), 199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 유지태,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호제도,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心泉桂禧悅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95.
- 유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이병욱, 환경경영론, 비봉출판사, 1998.
- 이순용·김오우·이종호,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을 통한 시장기회창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생산성논집(제12권 제2호), 1998.
- 이종영, 환경경영감사제도의 내용, 법제연구(통권 제14호), 1998.
- 정영태, 환경경영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자, KSA한국표준협회, 2000.
- 정환도, 환경감사의 이해와 사례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영남대지역발전연구소, 2001.
- 한철, 임의적 환경감사의 법리, 경영법률(한국경영법률학회), 1999.
- 허완·정찬영 공역, 환경경영·감사 시스템의 벤치마킹,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 1994.
- 환경부, 2002 환경백서, 2002.
- 한국표준협회 옮김, 알기 쉬운 환경 경영 체제, 1997.
-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環境リスクと環境法(米國編), 1995.

- Abl. EG L 168/1.
- ABl. Nr. 99 vom 11. 4. 1992, S. 1.
- ABl. Nr. C 231, S. 13.
- ABl. Nr. C 76, S. 18.
- Ark. Code Ann. SS 8-1-305, 8-1-307(Michie 1995).
- Balzereit/Kassebohm/Kettler: Umwelthaftung und Versicherungsschutz, BB 1996.
- Bartsch, T. : Erfahrungen mit Umwelt-Öko-Audits in den USA, ZUR 1995.
- Bell, Christopher L.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ISO 14001, Environmental Watch, Western Europe, 1995. 12. 1.
- Bräker, Stefan: Die erste Umweltprüfung, Beratende Ingenieure, 1996.
- Col. Rev. Stat. Ann. S 21-1-114. 5 (West 1997).
- Colo. Rev. Stat. Ann. SS 13-25-126. 5, 25-1-114. 5(4) (West 1997).
- Das nordrhein-westfälische Wirtschaftsministerium, EG-Öko-Audits in nordrhein-westfälischen Unternehmen, 1995.
-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Statement, 51 Fed. Reg. 25,004, 25,006 (1986)
- Ewer, W. : Öko-Audit: Der Referentenentwurf für ein Umweltgutachter- und Standortregistrierungsgesetz und die Übergangslösung zur Anwendung der EG-Öko. Audit-Verordnung, NVwZ 1995.
- Executive Order 12856, § 4-405.
- Falk, H. /Frey, S. : Die Prüftätigkeit des Umweltgutachters im Rahmen des EC-Öko-Audit-Systems, UPR 1996.
- Falk, H. : Die EG-Umwelt-Audit-Verordnung: die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in sechs Mitgliedstaaten, Manuskript, Sinsheim, 1996.
- Falke, J. : Umwelt-Audit-Verordnung. Grundsätze und Kritikpunkte, ZUR 1995.
- Feldhaus, Gerhard: Umwelt-Audit und Betriebsorganisation im Umweltrecht, in: J. Kormann (Hrsg.), Umwelthaftung und Umweltmanagement, 1994.
- Feldhaus, Gerhard: Umweltschutz durch Betriebsorganisation und Auditing, Dokumentation zur 17. wissenschaftlichen Fachtagung der Gesellschaft

- für Umweltrecht e. V., Berlin–Bielefeld, 1993.
- Grund/Gebhard/Hubert Peter/Kaus/Sanfleber/Siebert: Umweltschutz– die Herausforderung meistern, Düsseldorf, 1995.
- Henn, K.–P. : Auf Herz und Nieren prüfen, Müllmagazin 1993.
- Holdsworth, Lynn: Florida`s Environmental Self–Audit Legislation: An incentive for Environmentally –Conscientious Business or An Opportunity for the Corporate Polluter to Suppress the Truth?, 27 Stetson L. Rev. 210, 214 (Summer 1997).
- Idaho Code S 9–809(1) (1996).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Environmental Auditing – ICC Position paper on Environmental Audits, Publication Nr. 468, Paris 1989.
- Kan. Stat. Ann. S 60–3339 (1995).
- Kan. Stat. Ann. SS 60–3334, 60–3335 (1995).
- Kloepfer, M. : Betrieblicher Umweltschutz als Rechtsproblem, DB, 1993.
- Kothe, Peter: Das neue Umweltauditrecht, München 1997.
- Ky. Rev. Stat. Ann. S 224.01–040(10) (Banks–Baldwin 1997).
- Köck, Wolfgang: Das Pflichten– und Kontrollsystem des Öko–Audit–Konzepts nach der Öko–Audit–Verordnung und dem Umweltauditgesetz, VerwArch Bd. 87 (1996).
- Köck, Wolfgang: Indirekte Steuerung im Umweltrecht : Abgabenerhebung, Umweltschutzbeauftragte und “Öko–Auditing”, DVBl, 1994.
- Lauff, Rudolf: Das Umwelt–Audit in der betrieblichen Praxis, Köln 1993.
- Lübbe–Wolff, G. : Das Umweltauditgesetz, NuR 1996.
- Lübbe–Wolff, G. : Die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1994.
- Lübbe–Wolff, G. : EG–Verordnung zum Umwelt–Audit, DVBl. 1994.
- Lübbe–Wolff, G. : Öko–Audit und Deregulierung –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R 1996.
- Lütkes, Stefan: Das Umweltauditgesetz – UAG, NVwZ 1996.

- Marten/Schmid, Die EU-Öko-Audit-Verordnung und der British Standard (BS 7750) – Eine vergleichende Analyse, RIW 1995.
- Maurer, H.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 München 1995, § 23 Rdnr. 56.
- Mich. Comp. Laws Ann. S 324. 14807 (West 1997).
- Mich. Comp. Laws Ann. S 324. 14809(1) (West 1997).
- Mich. Comp. Laws Ann. SS 324. 14801 to 324. 14809 (West 1997).
- Minn. Stat. Ann. S 114C. 26 (West 1997).
- Miss. Code Ann. S 17-17-29(7)(g) (1996).
- Miss. Code Ann. S 49-2-71(3)(b) (1996).
- Murray, Paula C. : The Environmental Self-Audit Privilege: Growing Movement in the States Nixed by EPA, 24 Real Est. L. J. 169(1995).
- N. J. Stat. Ann. S 13:ID-125 (West 1997).
- OECD, Sustainable Development : OECD Policy Approaches for the 21th Century, Paris, 1997.
- Oetl, Robert: Unsicherheiten mit EMAS und ISO, Beratende Ingenieure, 1996.
- Ohio Rev. Code Ann. S 3745. 72(A) (Banks-Baldwin 1997).
- Ohio Rev. Code Ann. SS 3745. 70 to 3745. 73 (Banks-Baldwin 1997).
- Or. Rev. Stat. S 468. 963(1995).
- Peglau/Clark, The Europea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Regulation (EMA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SO 14001, UTA, 1995.
- S. D. Codified Laws S 1-40-34 (1996).
- S. D. Codified Laws SS 1-40-33 to 1-40-34 (Michie 1996).
- Scherer, J. : Umwelt-Audits : Instrument zur Durchsetzung des Umweltrechts im europäischen Binnenmarkt?, NVwZ 1993.
- Schulz, W. : Aktuelles zum Umweltrecht, UBA 1994.
- See Executive Order 12856 (Aug. 3, 1993).

- Sellner/Schnutenhaus, Umweltmanagement und Umweltbetriebsprüfung – ein wirksames, nicht ordnungsrechtliches System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NVwZ 1993.
- Tex. Rev. Civ. Stat. Ann. art. 4447cc(6)(d) (West 1997).
- UBA-Berichte 6/90, S. 83.
- Utah Code Ann. S 19-7-104 (1996).
- Utah Code Ann. S 19-7-109(1996).
- Utah Code Ann. S. 19-7-103(1996).
- Va. Code Ann. S 10. 1-1198 (Michie 1996).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vom 18. 12. 1995, BGBl. I.
- Waskow, Siegfried: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 Anforderungen nach der Audit-Verordnung der EG, 1994.
- Waskow, Siegfried: Betriebliches Umweltmanagement, 1997.
- Weinberg, P. /Reilly, K. A. : Understanding Environmental Law, Matthew Bender, New York, 1998.
- Wyo. Stat. Ann. S 35-11-1105(c)(ii)(D) (Michie 1996).
- Wöhe, Günter: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6. Aufl., München, 1986.

[Zusammenfassung]

Rechtsaufgaben des betrieblichen Umweltaudits

Kim, Myong-Yong

Zur Zeit ist es sehr wichtig, Umweltschutzaufgaben beispielsweise innerhalb der Unternehmen eigenständig wahrzunehmen. Das Umweltaudit ist seinem Grundgedanken nach ein Instrument zur systematischen Erfassung und Überprüfung der betrieblichen Stoff- und Produktkreisläufe einschließlich der Transportwege, des mit den Produktionsvorgängen verbundenen Risikopotentials sowie der Aufbau- und der Ablauforganisation im Betrieb.

Insgesamt handelt hierbei es sich zwar um die Kernbereiche des Umweltaudits. Das Ziel des Umweltaudits ist eine kontinuierliche Verbesserung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über die freiwillige Teilnahme einzelner Unternehmen und deren standortbezogene Maßnahmen. Das Umweltauditsystem spielt eine Rolle als ein Instrument indirekter Verhaltenssteuerung, das sich marktwirtschaftliche Mechanismen zunutze macht.

Zur Zeit nehmen viele koreanische Unternehmen an dem betrieblichen Umweltmanagementsystem und der Umweltbetriebsprüfung nach einzelnen Gesetzen und der Verwaltungsvorschrift teil. Meiner Meinung nach zeigt es sich, daß diese einzelnen Gesetzen und die Verwaltungsvorschrift das Vollzugsproblem in der Praxis haben sollen. Aus diesem Grund wird es hier versucht, Vorschläge zur Regelung des Umweltmanagementsystems und der Umweltbetriebsprüfung vorzulegen.

주 제 어 환경경영감사, 환경경영시스템, 환경보호, 환경감사, 기업의 환경보호

Key Words Umweltbetriebsprüfung, Umweltmanagementsystem, Umweltschutz, Umweltaudit, betrieblicher Umweltschutz